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원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발 의 자: 김원태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구미경, 김경훈,
김원중, 김재진, 김춘곤,
김형재, 민병주, 박영한,
박칠성, 박환희, 송경택,
유만희, 윤기섭, 이종태,
최민규, 최재란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○ 서울특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
「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를 제정(2019.9.26.)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왔음.
 - 2022.1.13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교육감은 ‘등록한 대안교육기관’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게 되었음.
 -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사업을 간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 대상을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까지 확대함(제2조 적용범위 개정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학생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<u>학생</u>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<u>학생</u>, 「<u>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대안교육기관과 학생</u>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.</p>